

信用狀 去來慣習에 있어 書類治癒原理와 禁反言法理의 適用方式 :

Banco General Ruminahui v. Citibank International 판례평석

金基宣*

-
- I. 序論
 - II. 事實關係
 - III. 爭點事項과 判決內容
 - IV. 判例評釋
 - V. 結論
-

I. 序論

신용장 거래관습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신용장 거래의 중심점인 은행, 특히 신용장 개설은행의 역할이라 하겠다. 주지하고 있듯이 신용장 거래 관습의 범세계적 설명규범인 신용장통일규칙과 전세계 유일의 신용장 거래법 전인 미국의 개정통일상법전 제5조에서는 각각 국제표준은행관행(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¹⁾과 표준관행(standard practice)²⁾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신용장거래에서 은행이 준수하여야 할 행위 준칙을 제시하고 있다.

신용장통일규칙상의 서류 검토를 위한 국제표준은행관행의 개념이나 개정미 통일상법전 제5조상의 표준관행의 개념은 그것의 본질이 대단히 발전적이고 진보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융통성이 부여되는 탄력적 운용기준이라 볼

* 桂山大學 貿易學科 副教授。

1) 신용장통일규칙 제13조 (a) 항 : "...제시된 서류가 문면상 신용장의 제조건과 일치 하는지 여부는 본 규칙에 반영된 국제표준은행관행에 따라야 한다...."

2) 개정미통일상법전 제5-108(e) 항 : "...개설인은 신용장을 정규적으로 발행하는 금융 기관의 표준관행을 준수하여야 한다....".

수 있겠으나,³⁾ 이 두 규범이 규율하고 있는 불일치 서류의 취급절차는 대단히 엄격한 기준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서류검토절차에 있어 개설은행에 엄격한 요건을 부과하고 있는 근본 취지는 신용장거래관습에 있어서의 수익자의 엄격 일치기준(strict compliance standard)과 조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이는 곧 가치 상대적 공정성이라는 본질적 원리를 반영하기 위한 것⁴⁾이라 볼 수 있다.

개설은행은 서류검토를 위한 합리적 기일인 7일 이내에 제출된 서류의 불일치 사항을 수익자 또는 서류 송부자에게 신속히 통보해 주어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할 경우에는 당해 하자서류를 수리한 것으로 추인되고, 동시에 통보의 내역에 기술하지 못한 불일치 사항이 있다면 차후 이를 이유로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이와 같이 개설은행에 엄격한 요건을 부과하는 논리는 소위 서류 치유의 원리 및 금반언 법리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고 보겠다.

서류치유의 원리(doctrine of documentary cure)란 수익자가 제출한 서류상에 하자가 있을 때 수익자의 대금회수라는 신용장 거래에서의 합리적 기대를 충족시켜 줄 목적으로 수익자로 하여금 당해 서류의 하자사항을 신용장의 유효기일까지 치유 또는 보완하여 재 제시(re-presentment)도록 할 기회를 부여하는 은행의 순수한 상업적 배려 행위로서의 신용장거래관습의 운용원리⁵⁾를 말한다.

금반언 법리doctrine of estoppel)란 이미 주지하고 있듯이 어느 일방이 자신의 말이나 행위로써 고의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느 특정의 사실을 믿도록 하여 놓고 추후에 그 사실을 번복할 수 없다는 원칙으로,⁶⁾ 신용장거래에 있어 전형적인 예로서는 개설은행이 여러번의 동일한 수익자와의 거래에서 지금까지 계속 하자 있는 서류를 이의 없이 수리 해 오다 작금의 신용장거래에

3)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기선, “신용장거래관습에 있어 효율과 협평의 구현방식에 관한 규범적 접근”, 무역상무연구, 제11권, 1998, pp. 308~313 참조; Milton R. Schroeder, “The 1995 Revisions to UCC Article 5, Letters of Credit”, *UCCLJ*, vol.29, 1997, pp. 346~349; Joseph D. Gustavus, “Letter of Credit Compliance under Revised UCC Article 5 and UCP 500”, *UCCLJ*, vol.29, 1997, 55~71 참조; Boris Kozolchyk, “Re UCP Article 13(a) & the ICC’s National Banking Practices Initiative”, *Letter of Credit Update*, vol.11, No.11, 1995, p. 32 이하 참조.

4) *Toyota Tsusho Corp. v. Comerica Bank* 927 F. Supp. 1065(E. D. Mich. 1996) 참조 : *Letter of Credit Update*, vol.12, No.10, 1996, p. 18 참조.

5) Gerald T. McLaughlin, “Letter of Credit: A Solution to the Problem of Documentary Compliance”, *Fordham Law Review*, vol.50, 1982, p. 887~894 참조.

6) John F. Dolan, *The Law of Letters of Credit*, Warren Gorham & Lamont, 1996, Section 6.60(1), 6-29, 6-30 참조; Burton V. McCullough, *Letter of Credit*, Matthew Bender, 1992, 4-87, 4-88 참조.

서 유독 서류의 수리를 거절한다든지, 또는 일단 제출된 서류상의 하자를 치유·보완케 한 후 언급하지 않았던 또 다른 하자사항을 이유로 대금의 지급을 거절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금반언 법리가 적용된다.

은행의 개입과 서류의 검토라는 절차가 반드시 전제되어야만 하는 신용장거래관습에 있어 언급한 두 가지의 원리 및 법리는 다변적인 상황에서 소위 가치 상대성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역사적으로 그 해석 적용에 역전이 거듭되어 오고 있는 대단히 미묘한 해석영역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서류치유 원리와 금반언 법리에 대한 기존의 해석적 용 방식의 혼동 상황에서 새로운 맥락구조를 형성할 수 있게 하는 판례 의견이 미국으로부터 보고되어 주목을 끌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당해 판례의견을 중심으로 신용장통일규칙, 미국의 개정통일상법전 제5조, 그리고 USCIB의 견해와 기존의 관련 판례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이 부문에 대한 가장 합리적인 해석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한다.

II. 事實關係

R. M. Wade & Co., d. b. a. Wade Mfg. Co. (이하 웨이드 사)는 관개수로물을 (irrigation products)을 제조·판매하는 기업으로써 1991년 9월 에콰도르의 판매상 Ribaldalgo Agro Consultores CIA Ltd.(이하 리발달고 사)와 웨이드 사의 관개수로용품을 판매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때 대금결제방식은 취소불능확인 신용장으로 하기로 하였고, 당해 신용장은 4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에 준거하기로 하였다.

1. 1차 신용장 거래

1991년 11월 14일 수입업자인 리발달고 사는 에콰도르의 퀴토(Quito)지역에 본점을 둔 Banco General Ruminahui, S. A.(이하 방코제너럴 은행)를 개설 은행으로 하여 신용장 금액 US\$ 446,000, 수의자를 웨이드 사로 하는 신용장을 개설하였다.

당해 신용장은 개설은행인 방코제너럴 은행과 환거래 취결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미국의 플로리다 주 마이애미에 영업소를 둔 Citibank International(이하 시티은행)에 의해 확인되었다.

당해 신용장의 조건 중에는 웨이드 사가 1991년 12월 31일까지 계약물품인 관개수로용품을 선적하고, 지불요청서와 신용장상의 요구서류를 구비하여 선적일 후 15일 이내에, 그러나 신용장의 유효기일인 1992년 1월 28일 이내에 시티은행에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었다.

[표 1] 1차 신용장 거래

개설의뢰인 : 리발달고 사	신용장 금액 : US\$ 446,000
개설은행 : 방코제너럴은행	신용장 조건 : ① 최종선적기일 (1991년 12월 31일)
수 익 자 : 웨이드 사	② 선적서류제시기일 (선적후 15일 이내)
확인은행 : 시티 은행	③ 유효기일 (1992년 1월 28일)

수익자인 웨이드 사는 신용장 조건과 내용에 따라 최종선적기일인 1991년 12월 31일에 계약물품의 선적을 완료하고 선적일 후 15일 이내인 1992년 1월 14일에 시티은행에 제반 관련서류를 제시하였다.

웨이드 사의 제출서류를 검토한 시티은행은 당해 제출서류의 내용이 신용장의 조건과 불일치하는 몇 가지 하자 사항을 발견해 내었지만 1992년 1월 22일, 웨이드 사에게 특별한 언급없이 하자사항을 통지해 주지 않은 채 대금을 지급해 주었지만 1차 신용장 거래는 개설은행이나 개설의뢰인으로부터의 아무런 클레임없이 종결되었다. 한편, 1차 신용장거래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서류의 하자 사항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1 차 신용장 거래에서의 서류의 하자내역

서 류	신용장 조건	하 자 사 항
상업송장	-	50개의 띠어쓰기 오류
포장명세서	Consignee = Banco General	Consignee = Ribaldalgo
포장명세서	-	"de"라는 표현이 12번씩이나 추가 기재됨
포장명세서	원본 요구	원본이라는 표기가 없음
포장명세서	Houston	Houston
모든 서류	Banco Ruminahui	Banco Rumi Ahui
선하증권	운송인 서명 요구	운송인 서명 누락

2. 2 차 신용장 거래

1992년 4월 방코제너럴 은행은 US\$ 400,000 상당의 신용장을 다시 개설하였다.

신용장 조건은 웨이드 사가 1992년 6월 30일까지 관개수로 용품을 선적한 후에 선적일 후 15일 이내에, 그러나 유효기일인 1992년 8월 4일 이내에 서류를 제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추가적으로 분할 선적이 허용되었으며 시티은행은 이 신용장을 확인하였다. 이후 당해 신용장은 선적일을 1992년 7월 30일로, 유효기일을 1992년 8월 21일로, 그리고 양류항을 변경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 조건 변경이 이루어 졌다. 이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2 차 신용장 거래

개설의뢰인:리발달고 사 개설은행:방코제너럴은행 수 익 자:웨이드 사 확인은행:시티 은행	신용장 금액:US\$ 400,000 신용장 조건: ① 최종선적기일(1992년 6월 30일→1992년 7월 30일) ② 선적서류제시기일 (선적후 15일 이내) ③ 유효기일(1992년 8월 4일→1992년 8월 21일) ④ 분할 선적 허용
-----------------------------------------------------------	----------------------------------------------------------------------------------------------------------------------------------------------------

수익자인 웨이드 사는 1992년 7월 7일에 계약물품의 일부를 선적하고, 선적서류제시기일의 마감일 하루 전인 7월 21일에 시티은행에 서류를 제출하고 대금의 지급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1992년 7월 17일 에콰도르 형사조사부(Ecuadorian Criminal Investigation Department)에서는 불법약물거래 혐의의 유력한 용의자로 리발달고 사를 지목, 리발달고 사의 재산을 동결하는 조치를 내리게 된 사태가 발생하였고, 이날 이후로 리발달고 사의 채권·채무는 완전히 정지되었다. 이로부터 4일 후 에콰도르 금융감독부(Ecuadorian Department of Banking)에서는 방코제너럴 은행에게 리발달고 사의 신용장 여신에 대해 지불금지 명령을 추가적으로 내렸고, 이에 따라 방코제너럴 은행도 자신의 환거래 취결은행인 시티은행에게 웨이드 사가 제출한 신용장 관련서류에 대해 대금지급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해 온 상태였다.

한편 웨이드 사가 서류를 제출한지 이틀이 지난 후 7월 23일에, 시티은행은 웨이드 사가 제출한 서류에 신용장 조건과의 불일치 사항이 너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이유로(표 4 참조) 웨이드 사에게 지급거절의 의사를 통보하였다. 웨이드 사는 시티은행으로부터 통보 받은 하자명세서(statement of discrepancies)에 입각하여 하자 서류를 완벽하게 치유·보완하여 재차 7월 24일과 7월 27일에 각각 보완된 서류를 제출하였다.

시티은행은 재차 제시된 서류가 완벽하게 치유·보완되었지만 당해 신용장의 조건 중 하나인 선적서류 제시기일의 경과를 이유로 당해 서류의 수리를 거절하였다.

[표 4] 2 차 신용장 거래에서의 서류의 하자 내역

서 류	신용장 조건	하 자 사 항
선하 증권	Guayaquil / Ecuador	Guyaquil / Ecuador
선하 증권	운송인 서명 요구	운송인 서명 누락
상업송장 품목#16	3/4175	3/4 175
상업송장 품목#17	1/2175	1/2 175
상업송장 품목#27	CODO DE 12×45GRADOS	CODO DE 12×45 GRADOS
포장 명세서	원본과 두장의 사본	원본 누락

3. 각 당사자들의 권리 주장

이 건을 담당하였던 플로리다주 지방법원(district court)에 제출된 각 당사자들의 제의서(motion)에 따라 이들의 주장을 정리하면 각각 다음과 같다.

수익자인 웨이드 사의 주장에 따르면,

첫째, 시티은행에 제출한 서류상의 하자는 사소한 것(immaterial defects)이기 때문에 첫 번째 거래에서의 신용장에서나 두 번째 거래에서의 신용장에서 시티은행이 대금지불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둘째, 시티은행은 두 번째 거래에서의 신용장 하에서는 제출된 서류의 하자를 이유로 대금지불을 거절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시티은행이 첫 번째 신용장거래에서 두 번째 신용장 거래에서와 유사한 하자 서류를 수리했다는 것은 그와 같은 하자를 용인하겠다는 의도이며, 이는 곧 두 번째

신용장거래에서의 하자서류에 대한 대금지급거절 권리의 포기(waiver)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셋째, 에콰도르 당국의 리발달고 사에 대한 자산동결조치와 신용장 여신지불 금지명령은 시티은행과 방코제너럴 은행의 대금지급거절 사유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확인은행인 시티은행의 주장에 따르면,

첫째, 시티은행은 서류검토에 있어 엄격일치원칙을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자가 제시한 서류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당해 서류 검토원칙에 따라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이전의 신용장거래에 있어 단 한 차례 하자서류를 수리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는 차후의 거래에서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를 요구할 권리가 상실된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개설은행인 방코제너럴 은행의 주장에 따르면,

첫째, 서류의 엄격일치원칙의 준수와 이전행위에 의한 금반언에 대해 근본적으로 확인은행인 시티은행의 주장과 일치함과 아울러,

둘째, 방코제너럴 은행은 에콰도르 국내의 은행이기 때문에 에콰도르 당국의 명령이나 조치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는 곧 주권면책이론(sovereign immunity doctrine), 국제예양(international comity)에 의한 행위라는 차원에서 의당 자신은 면책된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각 당사자들의 권리 주장에 대해 플로리다 지방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판시를 내렸다.

첫째, 서류검토의 엄격일치원칙의 준수와 관련하여 시티은행과 방코제너럴 은행의 주장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이며, 따라서 신용장 조건과 내용에 불일치 하는 하자서류를 제시한 웨이드 사에게 대금지급을 하지 않은 것은 정당화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둘째, 그러나 시티은행은 첫 번째 신용장 거래에서 웨이드사가 제시한 하자서류에 대해 아무런 이의나 통지 없이 대금을 지급한 결과 두 번째 신용장 거래에서 웨이드 사에게 서류의 엄격일치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포기된 것이다.

셋째, 신용장통일규칙이나 미국의 통일상법전 제5조에 따르면 은행은 합리적 기간내에(within a reasonable time) 서류를 검토한 후 하자 사항이 발견되면 지체없이(without delay) 당해 하자사항을 수익자 또는 서류 제시자에게 통

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티은행은 두 번째 신용장 거래에서 합리적 기간내에 적절히 행동하지 못하였고, 하자의 통보에 있어서도 지체없이 통보해야 한다는 요건을 준수하는데 실패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1992년 7월 21일 웨이드 사의 서류 1차 제시에 대해 시티은행이 7월 23일에 웨이드 사에게 서류의 하자사항을 통보해 준 바, 이 때는 이미 서류제시를 위한 최종 기간이 종료되고도 하루가 흘러가 버린 시간이 되며, 이는 궁극적으로 지불 거절의 통보는 언제 서류가 제시되었느냐에 관계없이 서류제시의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수익자인 웨이드 사의 입장에서 서류를 치유·보완할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것이고, 이를 위해 시티은행은 웨이드 사에게 다시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기회를 박탈해 버린 결과가 되었기 때문에 시티은행은 부가적으로 그와 같은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취지인 것이다.

이상에서의 근거에 따라 플로리다 지방법원은 웨이드 사에게 승소 판결을 내리고 시티은행의 재심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시티은행과 방코제너럴 은행은 이에 불복, 항소하기에 이른 것이다.

III. 爭點事項과 判決內容

1. 쟁점사항

본 건을 담당한 항소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쟁점 사항을 지적하고 있다.

첫째, 두 번째 신용장 거래에 있어 웨이드 사는 신용장의 유효기일 내에 서류를 제출하였다는 자체만으로 대금지급을 받을 수 있는가?

둘째, 시티은행은 두 번째 신용장 거래에서 웨이드 사에게 신용장 조건과 내용에 일치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포기되었는지에 대해 지방법원의 판단은 옳았는가?

셋째, 그와 같은 두 번째의 신용장 거래에서 시티은행이 웨이드 사의 불일치 서류에 대해 대금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금반언 법리에 적용된다고 판결한 지

방법원의 판단은 옳았는가?

상술한 세 가지 쟁점에 대한 항소법원의 사법 판단은 다음과 같다.

2. 판결요지

(1) 서류의 제시(document presentment)

시티은행은 웨이드 사가 두 번째 신용장 거래에서 신용장의 조건에서 요구하는 대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대금지불을 거절하였으므로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용장 조건을 보면 서류들은 선적 후 15일 이내에, 그러나 유효기일 내에 제시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본 법정은 신용장 거래에 있어 서류의 엄격일치원칙을 준수하고 있는 바, 웨이드 사가 주장하는 것은 엄격일치원칙의 적용여부가 아니라, 일치하는 서류를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가 라는 부분에 대한 것이다. 다시 말해 웨이드 사는 비록 신용장 상에 명기된 선적서류제출기간까지 신용장조건과 내용에 일치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 해도 유효기일이 남아 있다면 당해 유효기일까지만 신용장 조건과 내용에 일치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실제로 웨이드 사는 선적서류제시기일의 최종일에 서류를 제시했고, 반려된 서류를 치유·보완하여 유효기일까지 제출하였다는 것을 볼 때 선적서류제시기일과 유효기일과의 격차만큼은 소위 「서류 치유기간(cure period)」로 간주 할 수 있다는 주장인 것이다.

만일 웨이드 사의 주장대로 선적서류제시기일과 유효기일을 정의한다면, 선적서류제시기일은 단지 하자 있는 서류의 1차 제시기일로써의 기능 밖에 하지 못하는 결과가 될 것이며, 수익자는 자신의 서류에 하자가 있음에도 혹시라도 수리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요행을 바라는 반신반의한 상태에서 은행으로 하여금 남아 있는 유효기일 내에 수익자가 하자사항을 치유·보완할 수 있게 서둘러 서류를 일일이 검토해 주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하자서류를 제시한 웨이드 사에게 유효기일 전까지 당해 하자를 치유·보완케 하는 무제한적 권리를 부여한다는 것은 선적서류제시기일의 효용을 무의미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서류의 엄격일치원칙을 와해시키게 될 것이라 본다.⁷⁾

웨이드 사는 엄격일치원칙이 지배하는 신용장거래 하에서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선적서류제시기일까지 일치서류를 제출해야만 했고, 서류를 치유·보완 할 수 있다는 권리은 은행으로 하여금 서류를 검토하고, 하자를 통보하기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부여한 후에야 비로소 부여되는 권리라 하겠다.

따라서 웨이드 사는 선적서류제시기간까지 신용장 조건과 내용에 일치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시티은행의 웨이드 사에 대한 대금지급의 거절은 정당하다고 하겠다.

(2) 권리포기(waiver)

두 번째 신용장 거래에서 시티은행은 신용장 조건과 내용에 일치하는 서류를 요구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웨이드 사와의 첫 번째 신용장 거래에서 한 차례 하자서류를 인수하였다는 이유로 당해 서류거절 권리가 상실되었다고 판결한 지방법원의 판단은 법리해석의 오해가 있다고 보겠다.

신용장통일규칙의 어떤 조항에도 신용장 거래에서의 권리포기(waiver)를 다루고 있지는 않다. 물론 신용장 거래에서 소위 형평법상의 법리인 권리포기/금반언 법리를 적용 내지는 준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본 사안의 경우에 권리 포기의 법리를 적용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을 것 같다.

선례에도 있듯이⁸⁾ 이런 거래에서 엄격일치원칙의 준수를 면제시켜준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차후의 거래에서 엄격일치원칙의 준수를 주장할 권리가 포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만일 엄격일치하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권리가 상실된다고 한다면 다양하고 복잡한 국제 거래를 취급하는 은행의 업무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 보겠다. 이와 같은 차원에서 시티은행이 첫 번째 신용장거래에서 불일치 서류를 한 차례 수리했다는 이유만으로 웨이드 사와의 두 번째 신용장 거래에서 신용장 조건과 내용에 일치하는 서류를 요구할 권리가 상실되어 진다고는 볼 수 없다 하겠다.

-
- 7) 전정한 의미의 신용장 거래관습에 있어 유효기일과 선적서류 제출기일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상호 경합하는 경우에는 어느 것이든 먼저 종료하는 시점이 대금의 지급·인수·매입을 위한 서류제시의 최종일이 된다.
 - 8) *Courtaulds N. Am., Inc. vs North Carolina Nat'l Bank*, 528 F. 2d 802, 807(4th Cir, 1975); *Texpor Traders, Inc. vs Trust Co. bank*, 720 F. supp. 1100, 1115(S.D.N.Y. 1989); *Alpargatas, S. A. vs Century Business Credit Corp.*, 183 A. D. 2d 491, 583 N.Y.S. 2d 441, 442, appeal dismissed, 80 N.Y.S. 2d 804, 622 N.E. 2d 305(1993).

(3) 금반언(estoppel)

신용장통일 규칙(4차 개정) 16조에서는 금반언과 관련된 규정이 있다.⁹⁾

“개설은행은 서류를 검토하기 위해서 또는 서류를 수리할 것인가 아니면 거절할 것인가를 전항과 같이 결정하기 위하여 합리적 기간을 가질 수 있다.”

“만일 개설은행이 서류를 거절하기로 결정한다면, 개설은행은 서류를 송부하여 온 은행(서류송부은행) 또는 서류를 수익자로부터 직접 접수하였으면 수익자에게 지체없이 전기통신수단이나 또는 그것이 불가능하면 다른 신속한 수단으로 그러한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만일 개설은행이 본 조의 c) 항과 d) 항의 규정에 부응하지 못하거나 또는 서류 제시인의 임의 처분을 위하여 서류를 보관하거나 서류 제시인에게 반송하지 못 할 때에는, 개설은행은 동 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내용에 일치하지 아니한다는 것에 대한 항변 제기의 권리로부터 배제된다.”

위의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개설은행과 확인은행은 서류를 검토할 합리적인 기간을 가지며, 만일 당해 서류를 거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러한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사건에서 웨이드 사는 서류제출 기간의 마감일 하루 전에 시티은행에 서류를 최초로 제시하였고, 시티은행은 그로부터 이를 후 전화상으로 당해 제출 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내용에 불일치한다고 통보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지방 법원에서는 시티은행은 합리적 기간 내에 서류를 검토하지 못했고, 나아가 하자의 통보 역시 지체없이 행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실질적으로 판단해 볼 때 신용장 거래계에서 무엇이 합리적 서류검토 기간인가라는 판단은 은행의 서류검토 관행을 분석해 봄으로써 결정될 부분이다. 그리고 이러한 결정을 위해서는 각 사안의 성격·목적 그리고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시티은행이 합리적 기간 내에 서류검토를 해 내지 못하였다는 판단은 언급한 내용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였던 결과로 보인다.

즉 웨이드 사는 선적서류 제출 마감일 하루 전인 1992년 7월 21일에 시티은행으로서 서류를 제출하였고 시티은행은 그로부터 이를 후, 선적서류 제출 마

9) 신용장 통일 규칙(4차 개정) 16조 c), d), e) 항 참조.

감일이 하루 지난 1992년 7월 23일에 제시된 서류의 하자 사항을 통보하였다. 그 결과 웨이드 사는 서류의 하자를 치유할 기회가 박탈되어 버렸지만, 엄밀한 의미로 합리적 기간이라 함은 수익자가 서류를 치유·보완하여 신용장의 유효기간 또는 선적서류 제출기간까지 재차 서류를 제시할 기회를 부여할 만큼 서류의 검토를 서둘러야 하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보겠다.

따라서 시티은행이 이틀간의 서류검토를 거쳐 서류의 하자를 통보했다는 것이 단지 서류제출 마감기한이 이미 지난 후라는 이유만으로 합리적 서류검토 기간을 준수하지 못했다는 판단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실제로 1993년 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13조 b) 항에서도 서류검토는 합리적 기간 7일을 부여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볼 때 서류의 접수 후 이틀만에 서류검토를 완료하여 전화라는 전기 통신수단을 통해 하자 사항을 통보해 준 시티은행이 웨이드 사의 행위가 금반언 법리에 적용된다고 판시한 지방법원의 판결은 법리 해석의 오해가 있다고 보겠다.

IV. 判例 評釋

본 사건은 플로리다 지방법원의 판결이 항소법원에서 번복되어 결과적으로는 시티은행과 방코제너럴 은행이 승소한 판례이지만 본 사건이 주는 주요한 시사점은 크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판례의견이 정립되었다는데 있다고 보겠다.

1. 권리포기 및 금반언 법리의 적용방식

본 사건이 주는 첫 번째의 주요한 시사점은 지금까지 그 견해가 분분하여 오랜 동안 판례의 역전이 거듭되어 왔던 신용장 거래에 있어서의 「이전행위에 대한 금반언」 법리가 비로소 확립되었다는 데 있다고 보겠다.

우리 나라에 있어 1985년에 대법원에서 판시된 한 판례¹⁰⁾에서는 다음과 같

10) 1985. 5. 28. 대법원 제1부 84다카 696, 697(외환은행 대 충북은행의 대금반환 청구사건). 이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박대위, 신용장, 법문사, 1997, pp. 586~

이 판결함으로써 신용장 거래에 있어서도 소위 이전 행위에 있어서의 금반언 행위를 인정한 바 있다. 즉 「이 신용장 거래 전에 같은 개설의뢰인의 개설의뢰에 따라 15회에 걸쳐 이 사건과 동종의 신용장 거래를 하고 원고에게 신용장 대금을 지급한 후 개설의뢰인으로부터 보상을 받아 결제를 한 사실이 있는 바, 위 거래시에도 이 사건 거래에 있어서와 같이 신용장 조건에는 서명된 상업송장을 요구하고 있었으나 원고가 제시한 상업송장은 서명이 아닌 고무인의 기명이 된 것이 있었고, 또 위 거래 중 8회는 개설의뢰인의 표시가 신용장에는 'Lami Ind. Co. Ltd. Seoul, Korea'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에 원고가 제시한 상업송장에는 'Lami Industrial Co. Ltd. Kyeong Gi Do, Korea'라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와 같은 서류의 불합치를 문제 삼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신용장 대금을 지급하여 결제해온 사실이 인정된다. 생각건대 수익자로부터 화한어음을 매입하여… 계속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신용장 조건과 일부 불합치한 서류를… 아무런 이의가 없이 신용장 대금을 지급 받아 왔다면 원고로서는 위와 같은 서류의 불합치를 무시하고 신용장 대금을 결제하여온 피고은행에 의해 거부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 하에 이를 수익자로부터 매입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 은행이 이 사건 신용장 거래에서 유독 위와 같은 서류의 불합치를 이유로 원고에게 신용장 대금의 지급을 거부한 것은 상대방의 신뢰와 이익을 전혀 배려하지 아니한 행위로써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처사라 보지 않을 수 없다…(중략)」라고 판시함으로써 동일 거래선과 동종 거래에 임하는 은행의 금반언 행위에 일침을 가하였다. 미국의 경우에도 대표적으로 *Schweibish v. Pontchartrain State Bank*, 389 So. 2d 731(La. App. 1980)와 *Titanium Metals Corp. v. Space Metals, Inc.*, 529 P. 2d 431(Utah 1974) 판례에서 이와 같은 취지의 판례 의견이 표출되어 왔었다.

그러나 이제 이상과 같은 취지의 국내외 판례 의견은 더 이상 아무런 저항 없이 지지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현존하는 신용장통일규칙의 어떤 조항에도 이전의 유사서류와 관련해서 현재의 거래에서의 서류를 대조·비교 검토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없을 뿐만 아니라, 소위 신용장거래에서의 국제표준은행관행의 결정집단이라고 볼 수 있는 미국의 USCIB¹¹⁾가 공표한 표준

590 참조.

11) USCIB는 미국 내에서 국제무역거래에 수반되는 제반 은행업무를 취급하는 은행들로 구성된 금융기관협회이며 이의 회원은행은 약 500여개의 은행에 달한다:

관행에 의해서도 지지 기반이 상실되었고¹²⁾ 무엇보다도 결정적인 것은 1997년 개정·공포된 현존하는 유일의 신용장 거래법전인 개정통일상법전 제5조에서도 본 사건의 판례의견을 강력한 의미로 확인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좀 더 자세히 분석하도록 한다.

첫째, 4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16조 (c), (d), (e) 항 (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14조 (d), (e) 항) 이 규정하고 있는 은행의 권리소멸규율(preclusion rule) 또는 엄격한 의미의 금반언(strict estoppel) 법리는 이전 거래와의 연장선에서 해석·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며, 그 핵심적 내용 중 하나인 하자 사자의 총망라 의무는 서류를 수리 거절할 경우 그 사유와 까닭을 총망라해서 통보해주라는 의미인 것인지 하자있는 서류를 수리할 경우 그 하자가 어떠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리하겠다는 것까지 통보하라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차후에 동일한 거래선과 동일한 신용장 거래에 임한다 해도 이런 신용장 거래에 하등의 구속을 받을 까닭은 없다고 보겠다.

둘째, 언급한 은행의 권리소멸 규율 또는 엄격한 의미의 금반언 법리, 즉 개설은행 및 확인은행은 서류검토를 위한 합리적 기간인 7일 이내에 제출된 서류의 불일치 사항을 수의자에게 신속히 통보해 주어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할 경우에는 당해 하자 서류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추인되고, 동시에 통보의 내역에 기술하지 못한 불일치 사항이 있다면 차후 이를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절할 경우 금반언 행위에 해당한다는 둥 법리는 그것의 효력이 차후의 신용장 거래에 있어서의 동일한 서류하자사항까지 포괄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 는 것은 이미 국제적으로 확인된 은행의 표준관행이라 하겠다. 일반적으로 신용장거래 하에서 서류를 검토하는 요원은 하루에도 수십건이 넘는 다양한 거래선의 복잡한 서류를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 특정 거래와 동일한 거래가 있다 할지라도 당해 서류 검토 요원이 이미 지난 이전 거래를 담당하였던 바로 그 서류 검토 요원일 확률도 적을 뿐더러, 만일 동일한 서류 검토 요원이라 할지라도 과거의 검토 서류를 일일이 파일화 시켜 놓지 않고서는 이전의 서류하자사항과 작금의 거래에서의 서류하자사항을 비교 분석하기란 불가능 할 것이다.¹³⁾ 만일 이전 거래에서의 서류의 불일치 사항을 작금의 거래에서의

Joseph D. Gustavus, "Letter of Credit Compliance under Revised UCC Article 5 and the UCP 500", *UCCLJ*, 1997, p.56.

12) *Letter of Credit Update*, vol.12, No. 2, Feb, 1996, pp.37~41 참조.

서류불일치와 비교하여 검토하는 관행이 신용장 거래에 존재하거나 또는 강요된다면 신용장이라는 대금 결제방식의 효용성은 그 순간부터 정지될 것이라는 차원에서 이런 거래에서의 금반언 법리는 신용장 거래관습에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표준관행이라 하겠다.

셋째, 신용장거래 관습은 그것이 계약법(contract law)의 산물이 아니라 부단한 진화의 과정을 통하여 오랜 역사 속에서 새롭게 적용하는 과정을 겪으며 발전되어온 상관습의 형태이기 때문에, 계약 해석의 원칙을 그대로 신용장 거래에 적용하면 신용장 거래 관습에 있어서의 개념적 오염을 초래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계약의 해석 원칙인 권리포기 및 금반언 법리는 선택적으로 해석·적용될 필요가 있는 것이긴 하나 논하고 있는 이전 거래에 있어서의 금반언 법리는 현존하는 세계 유일의 신용장 거래 법전인 미국의 개정통일상법전 제5조에서도 이를 강력한 의미로 배척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즉 개정미통일상법전 제5-108조의 공식 주석에서는 “개설인 또는 개설의뢰인이 한차례 이상의 수 차례에 걸친 서류의 제시에 있어 서류 하자에 대한 권리 포기는 미래에 있을 서류의 제시에 있어서의 유사한 서류하자 사항까지 권리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개설인 뿐만 아니라 수익자 어느 누구에게도 과거의 권리 포기에 의한 대금의 지급이 미래의 하자 있는 서류 제시에 대해서도 대금지급이 이루어진다는 정당성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권리 포기 및 금반언 법리에 관한 본 사건의 판례의견의 타당성을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다 하겠다.¹⁴⁾

-
- 13) 신용장거래관습을 지배하는 신용장통일규칙이나 미국의 개정통일상법전 제5조는 개별적 사안마다 소위 보통법상의 형평(common Law equity)을 피하고 있다고 보기보다는 수없이 다양하고 복잡한 신용장 거래 전체에 전반적으로 해석·적용 가능한 형평의 논리가 구현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계약법상으로 포괄할 수 없는 신용장의 상업적 특수성을 이와 같은 접근법으로 설명하는 USCIB의 공식입장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Letter of Credit Update*, vol.12.No.2, 1996, pp.39-41 참조.
- 14) 개설은행이 자신의 독자적인 행위로 수익자의 불일치 서류를 계속 이의 없이 수리해 왔다면 이는 명백히 금반언 논리에 적용되는 것이나 개설은행과 개설의뢰인간의 하자면제교섭의 결과 수리된 불일치 서류에 대한 것은 그 하자면제가 개설의뢰인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개설은행은 면책될 수 있다는 Kozolchyk의 견해는 수정될 필요가 있다. 전자의 경우 역시 개설은행은 이전행위에 의한 금반언 법리의 적용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이다(Boris Kozolchyk, “Expert commentary”, *Documentary Credit Insight*, ICC Pub. S.A., Winter, 1997, p.7 이하 참조); 물론 이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설은행의 하자서류에 대한 양해합의 등이 있었음을 수익자에게 통보해주는 것이 현명할 수도 있지만 이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단지 호의의 행위로 해석될 뿐이다(김기선, “1995 마통일상법전 제5조의 개정과 신용장거래관습의 해석에 주는 효과 분석 : 신용장통일규칙과 신용장거래관습의

2. 서류 치유원리의 적용방식

신용장통일규칙이 제시하는 합리적 서류검토기간의 개념은 언급한 바와 같이 지체없이 이루어지는 서류검토기간이기 때문에 이 기간 중의 고의적 지연은 정당화 될 수는 없을 것이다. 개설은행(및 확인은행)의 서류 취급에 있어서의 이와 같은 엄격한 해석원칙은 수익자에 대한 순수한 상업적 목적의 배려행위인 서류 치유의 원리를 상정하고 있기 때문이라 해석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원리는 궁극적으로 서류검토의 엄격일치기준의 엄격성을 보완해 주는 묵시적인 의미로서의 신용장거래관습이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은행의 서류검토 취급절차는 일단 서류가 접수되면 접수된 당시의 은행의 관련 업무 정황에 따라 어느 정도의 지연은 있을 수 있다. 예컨대 은행의 서류검토요원이 당해 은행에 제출된 서류를 검토함에 그 업무량이 과다하기도 하고, 또 업무처리의 방식은 제출된 순서에 따라 각각의 서류들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경우 제출된 서류의 검토에는 2~3일 간의 지연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서류검토은행이 서류의 검토 후 당해 서류의 거절을 결정할 경우에는 수익자 또는 서류 송부자에 대한 의사결정의 통보가 지체없이 합리적 기간(5차 개정의 결과 서류접수 익일 후 7일 이내)내에 이루어지면 당해 은행에게 부당한 지연이 있다고 책임 지우기에는 온당치 않다는 해석도 지배적이라는 차원에서 본 사건에서 논의하고 있는 서류치유원리가 희망적 의미로 적용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여러 제약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함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첫째, 신용장통일규칙상의 합리적 기간과 검토 후 하자 사항의 지체 없는 통보는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판단되어야 하는 별개의 메카니즘이라 하겠다. 은행의 입장에서 제시된 서류를 거절할지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이 「합리적 기간의 해석 영역」이며, 일단 거절하기로 결정한 후 이를 통보하는 과정이 「지체 없는 통보의 적용영역」이 된다.¹⁵⁾

괴리조정”, 무역학회지, 제22권 3호, 1997, p.293 참조.

15) 물론 이와 같은 일련의 서류취급과정은 신용장통일규칙 5차 개정과 미국의 통일상법전 제5조의 개정 결과 7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함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Bank of Cochin v. Manufacturers Hanover Trust Co*, 808F.2d 209(2d cir. 1986); Robert M. Rosenblith, “Current Development in Letter of Credit Law”,

따라서 개설은행의 하자서류 인수거부의 의사결정은 합리적 기간의 종결을 의미하고, 이 시점이 곧 지체 없는 하자사항 통보의 의무개시시점이 된다는 것이며, 전자의 경우에는 은행의 서류검토에 수반되는 제반 정황적 요인들이 충분히 고려되어 그 소요기간이 계산될 수 있다는 정황적 검증(totality of the circumstances test)이 필요하고,¹⁶⁾ 후자의 경우에는 일단 그것이 확정되면 어떠한 지체의 사유도 인정하지 않는 소위 자체성 검증(without delay test)이 적용된다 하겠다.

따라서 서류검토는 신속히 이루어졌다 해도 불일치 사항의 통보에 있어 그 통보의 수단이 전기통신수단이 아니었다든지(전기통신수단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불일치 사항통보의 의사결정이 있었음에도 불합리하게 지체한 후에 통보가 이루어 졌다면 은행은 책임을 면치 못 할 것임은 자명하다. 본 사건을 심의한 플로리다 지방법원이 선례로 참고한 *Datapoint*¹⁷⁾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본 사건은 시티은행이 서류검토를 종료한 후 전화라는 신속한 전기통신수단으로 수익자에게 통보해준 이상 어떠한 지체의 요인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이와 같은 논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은행들의 서류검토 행태에 영향을 주는 정황적 요인들의 정당성이나 충분성이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개설은행 등의 서류 수리여부의 의사결정과 지체 없는 통보와의 분기점이 되는 그 시점이 언제였느냐에 대한 결정은 다분히 추상적이고 상황의 존적이기 때문에 이에는 반드시 부당한 책임의 전가 형태인 소위 도덕적 위험(moral hazard)이 완전히 배제된, 순수한 의미로서의 최대 선의의 원칙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서류치유원리가 적용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류상의 하자가 유효기일 전에 치유 가능한 하자(curable defects)여야 한다. 서류치유원리는

16) *UCCLJ*, vol.21, 1988, pp.177~178.

17) 합리적 기간의 판정을 위해서는 거래 사안들의 특성, 목적, 그리고 상황 등을 반드시 고려한 상태여야 한다; *Alaska Textile Co. v. Chase Manhattan Bank, N. A.* 982F. 2d 813, 823(2d cir. 1992) 참조.

17) *Datapoint Corp. v. M&I Bank*, 665 F. 722, 727(W.D.Wis. 1987); *Datapoint* 사례는 수익자가 유효기일에 근접하여 서류를 제출하였는바, 개설은행이 서류를 제출한 당일 서류검토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자에게 서류의 하자 사항을 전기통신수단이 가능했음에도 이를 이용치 않고 다른 통보수단으로 통보해줌으로 말미암아 유효기일이 종료됨으로써 서류상의 하자를 수익자가 충분히 치유·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였다는 이유로 개설은행이 패소한 대표적 판례이다.

수익자가 제출한 서류상에 하자가 있을 때 당해 하자를 유효기일 전에 치유내지 보완하도록 상업적 차원에서 배려해 주는 원리이기 때문에 유효기일 전에 치유가 가능하지 않은 하자(incurable defects)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미를 줄 수 없고, 사안의 성격에 따라 개설의뢰인의 하자면제 의사 표시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결국 수익자는 자신이 제출한 서류에 치유불능하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떠한 의미로도 개설은행에게 서류치유원리 적용의 유인을 제공할 수 없고, 그 결과 자신의 권리 주장은 아무런 의미를 줄 수 없게 된다. 한편, 이 때 주의할 것은 유효기일과 함께 선적서류제출기일이 신용장에 명기되어 있을 경우 어느 것이든 먼저 종료되는 시점이 서류의 제출 마감 기한이 된다는 것이다. 만일 유효기일보다 선적서류 제출기일이 먼저 도래하는 시점이라면 서류는 반드시 당해 서류 제출기일까지 제시되어야 한다.

셋째, 본질적으로 합리적 서류검토기간의 조율과 지체 없는 통보의 요건은 개설은행이 서류의 염격일치기준을 준하는 것만큼이나 수익자에게 서류상의 하자를 보완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가치 상대적 공정성의 일환이지만,¹⁸⁾ 진정한 의미의 서류치유원리는 개설은행이 국제표준은행관행에서 이탈해서까지 황급히 서둘러 서류를 검토 완료하는 것까지 종용하거나 강제하는 수단은 될 수 없다는 것이다.¹⁹⁾ 왜냐하면 유효기일에 맞춰 서류를 제출한 수익자가 서류를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만큼이나 본 사건에서와 같이 유효기일에 충분한 치유기간의 확보 없이 서류를 제출한 수익자는 일견 불일치 서류의 우연한 수리로 특별한 의미의 부당이득을 보지 않는 한, 자신의 신용장 거래의 목적은 달성 불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손실의 불확실성에 노출된 것이며, 그 결과 당해 서류의 하자 사항의 경중이나 과다에 관계없이 서류를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는 리스크를 부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본 건에서 수익자인 웨이드 사가 활용할 수 있는 서류치유의 원리는 상당히 근면한 수익자임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며 이의 적용범위에 있기 위해서는 충분한 치유기간(cure period)을 고려하였어야 했다는 것이다.

18) *Letter of Credit Update*, vol.12, No.10, 1996, p.18, *Toyota Tsusho Corp. v. America Bank*, 927F. Supp. 1065(E. D. Mich. 1996).

19) 개정미통일상법전 제5-108조, comment 2 참조.

V. 結 論

신용장 거래관습의 해석기준이 되는 국제상관습으로서의 신용장통일규칙, 국제상거래법으로서의 미국의 개정통일상법전 제5조, 그리고 국제상관습법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법원의 판례의견들은 그 해석과 관련하여 신용장 거래 관습 자체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을 지향해야 함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 신용장 거래관습의 합리적인 해석·적용 방안은 다음의 요소 고려를 필수적으로 수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첫째, 신용장거래관습의 효율성 제고방안의 모색 노력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법원칙 및 판례의견 등이 과연 신용장 관련당사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효율적으로 행동하게 유도하느냐 하는 유도의 문제와 더불어 관련 당사자들 사이에 신용장 거래 관습하에서의 리스크를 어떻게 분담시키느냐 하는 리스크 분담의 문제를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 신용장거래 관습하에서의 관련당사자들간의 권리의 보호와 보장이라는 형평성의 유지 방안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즉 신용장 관련 당사자 일방에게 효용 또는 이익에 치우친다면 이는 공평한 거래관습이 아닌 것이므로, 어느 일방의 효용이 줄어들더라도 공평한 분배가 가능하도록 신용장의 효용성을 분배시키는 형평적 기준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결국 신용장거래관습의 최적의 해석 기준인 신용장 통일규칙, 미국의 개정통일상법전 제5조, 그리고 법원의 판례의견의 원리에 있어 최대의 법률적·실무적 과제는 신용장거래관습 체제의 효율적 확대성장을 도모하는 상태에서 각 거래당사자간의 이익과 리스크의 총체적 개념으로서의 효용을 어떻게 형평에 맞게 실현할 수 있겠는가 하는 측면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가 다룬 이 판례는 신용장거래관습에 있어서 첨예한 관심사 중의 하나인 권리포기 및 금반언의 적용방식과 서류치유원리의 본질에 대해 가장 합리적인 국제표준은행관행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크다고 볼 수 있겠다.

參 考 文 獻

- 김기선, “서류치유원리적용과 하자면제교섭권 활용이 서류검토행위의 합리성에 주는 효과 분석 : 신용장 거래 관습해석의 법경제학적 접근,” 무역학회지, 제 23 권 2 호, 1998.
- 김기선, “신용장거래관습에 있어 효율과 형평의 구현방식에 관한 규범적 접근,” 무역상무연구, 제 11 권, 1998.
- 김기선, “1995 미통일상법전 제 5 조의 개정과 신용장거래관습의 해석에 주는 효과분석 : 신용장통일규칙과 신용장거래관습의 괴리조정”, 무역학회지, 제 22 권 3 호, 1997.
- 박대위, 신용장, 법문사, 1997.
- Barnes, James G., “Nonconforming Presentations Under Letter of Credit: Preclusion and Final Payment”, *Brooklyn Law Review*, vol.56, 1990.
- Dolan, John F., “Strict Compliance with Letter of Credit: Striking Fair Balance”, *Banking Law Journal*, vol.102, 1985.
- Dolan, John F., *The Law of Letters of Credit*, Warren Gorham & Lamont, 1996.
- Gustavus, Joseph D., “Letter of Credit Compliance under Revised UCC Article 5 and the UCP 500”, *UCCLJ*, 1997.
- Kozolchyk, Boris, “Expert Commentary”, *Documentary Credit Insight*, ICC Pub.S.A. 1997.
- Kozolchyk, Boris, “Re UCP Article 13(a) & the ICC's National Banking Practices Initiative”, *Letter of Credit Update*, vol.11, No.11, 1995.
- Kozolchyk, Boris, “Strict Compliance and the Reasonable Document Checker”, *Brooklyn Law Review*, vol.56, 1990.
- Letter of Credit Update*, vol. 12, No. 2, 1996.
- Letter of Credit Update*, vol. 12, No.10, 1996.
- McCullough, Burton V., *Letter of Credit*, Matthew Bender, 1992.
- McLaughlin, Gerald T., “Letter of Credit: A Solution to the Problem of Documentary Compliance”, *Fordam Law Review*, vol. 50, 1982.
- Rosenblith, Robert M, “Current Development in Letter of Credit Law”, *UCCLJ*, vol. 21, 1988
- Schroeder, Milton R., “The 1995 Revisions to UCC Article 5, Letter of Credit”, *UCCLJ*, vol.29, 1997.

ABSTRACT

A Study on the Interpretation & Application of Documentary Cure and Estoppel Doctrine in Letter of Credit Transaction

based on the *Banco General Ruminahui v. Citibank International Case*

Kim, Ki Sun

This study analyzes the U.S. case law which challenges the legal conclusions of the district court with respect to the applicability, and effect, of the doctrine of waiver and estoppel in addition to the doctrine of documentary cure.

The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the documentary cure requirement can not be interpreted to mean early enough to allow the beneficiary to cure and represent the documents before the presentment deadline or expiry date of letter of credit. The mere fact that the presentment period expired before the completion of bank's review and notification process does not compel any conclusion about whether the examiner spent a reasonable amount of time examining the documents. Indeed, the reasonable time requirement does not imply that banks examine a presentation out of order or hurry a decision based upon particular needs or desires of a beneficiary.

Secondly, even if the doctrine of waiver can apply to letter of credit governed by the strict compliance standard, a one-time acceptance of discrepant documents by a bank does not waive the bank's right to insist upon conforming documents in all subsequent letter of credit transactions between the bank and beneficiary. Revised UCC Article 5 is highly persuasive on this point: waiver of discrepancies by issuer or an applicant in one or more presentation does not waive similar discrepancies in a future

presentation. Neither the issuer nor the beneficiary can reasonably rely upon honor over past waivers as a basis for concluding that a future defective presentation will justify honor.

Key Words : Letter of Credit, Documentary Cure, Estoppel